

# 情報管理와 專門職 倫理

李 淳子\*

## — 목 차 —

I. 序論: 專門職으로서의 情報管理職	3. 英國과 日本의 實例
II. 정보관리직의 윤리성	1) 영국. 2) 일본.
1. 윤리성 강조의 當爲性	4. 계속되는 實效性에 대한 爭點
2. 윤리성이 관련되는 업무	IV. 결론
1) 기술봉사부문. 2) 이용자봉사부문. 3) 기타.	영문초록
III. 사서및 정보관리직의 倫理綱領	참고문헌
1. 윤리강령의 意味	
2. 미국의 사서직 윤리강령	

## I. 서론: 전문직으로서의 정보관리직

생업으로서의 직업은 사회적으로는 有機的 관계로서의 役割分擔이며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인 自我實現의 수단이다. 우리사회에 수 많은 직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고 분류되는 직종은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직업”으로<sup>1)</sup> 비교적 높은 수입과 사회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1) Morris L. Cogan, “The Problems of defining a professions,” B. Y. Landis ed.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conduct*. (Philadelph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297. 1955) p.105.

적 지위에 따른 존경과 羨望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전문직은 사회계층 構造的으로 중상류 계층을 이루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中樞的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전문직의 분류기준은 매우 유동적이므로 전문직의 계속적인 증가의 결과 중산층이 확대 되고 사회계층의 양극간의 갈등이 鈍化되어 점진적인 사회발전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면 전문직은 구체적으로 非專門職과 어떻게 다른가.

Moore 는 전문직의 특성을 4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첫째, 고도의 知的 훈련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어야 하며 둘째, 公共에 대한 봉사를 주된 목표로 삼아 기술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책임을 지며 셋째, 금전적 보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므로 富의 획득을 직업상의 성공과 연결짓지 않으며 넷째, 업무수행에 있어 자유를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sup>2)</sup> Bayles는 이 외에도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들의 권익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전문단체를 갖는 것을 지적했다.<sup>3)</sup>

이러한 전문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서양의 傳統社會에서 醫師, 聖職者, 法律家를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시 된다. 이들은 모두 공공에 대한 봉사를 주된 목표로 삼아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돌보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고도의 지적 훈련과 기술의 研磨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을 돌보는 일에서는 금전적인 보수가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자기일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의 專門化에 따른 일의 분업화, 기술의 향상, 또 서비스업의 확대등의 추세에 따라 과거에는 비전문직 또는 準專門職으로 看做되었던 많은 업종이 전문직의 조건을 갖추고 전문직으로 浮上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객관적인 조건이 전문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분야의 어떤 일이라도 그 종사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문직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Wilbert E. Moore, *The Professions: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p. 3-22.

3) Michael D. Bayles, *Professional ethics*. (Belmont, Ca. : Wadsworth Pub.Co.,1981) p.8.

封建社會의 귀족계층이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갖는 道義的인 義務 (Noblesse oblige)를 가졌던 것과 같은 이유로 현대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 사회의 지도계층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된다. 이는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계층의 의무이며 또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갖는 期待에 대한 보답이다. 이러한 특권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성에 대한 自己規制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전문직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지식체계의 分化에 따른 학문의 가치치기현상(Twiggling phenomena)은 한 전문직의 담당분야의 細分化를 招來했으며 각 분야간의 경쟁적인 영역확보에 따르는 排他性,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지나친 矜持에서 오는 우월감이나 독선주의, 전문직 단체의 특권 계층화로 인한 반사회적인 違和感 조성, 또는 人力의 需要供給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단가를 높이는 행위등은 자칫하면 전문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긴다.

高度의 전문화 경향은 동시에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와의 더욱 긴밀한 교류를 필요로 하며 타분야간의 상호존중이 없이는 어느 전문직도 발전해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각 전문직은 그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업무수행의 행동규범을 정해야 할 필요가 날로 커가고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이 문제가 많이 논의 되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성이 失墜하여 비윤리적인 사건이 각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점, 또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전문직의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강화된 점도 들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타분야 사람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전문직 내부에서 서로를 點檢하고 牽制함으로써 전문직 윤리를 확립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정보관련직의 전문직 是非는 이미 일세기전 사서직의 전문성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인 도서관학과가 개설되고 사서들의 전문단체인 도서관협회가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족된 이래 20세기중반까지도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 또 정보의 價値認識의 변화에 따라 사서직의 전문성 인정은 확고해 졌다. 전통적인 사서직의 업무가 비영리 기관인 도서관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제품봉사가 상업적이윤추구의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정보관리업무는 사실상 모든 다른 전문직을 통정

하는 전문직이 되었다. 미국정보학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1989년 年次會議의 基調演說에서 정보관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정보학이 전산학, 인지학, 심리학, 언어학, 수학, 논리학등의 총합체로서의 전문학문분야를 이룸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정보관련 전문직의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모든 과학기술이 순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듯이 정보의 수집, 분석, 전달행위도 윤리적인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각성하였다. 즉, 정보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있을수 없다고 해서 정보를 다루는 방법이나 목적에서 그 종사자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4)</sup>

본고에서는 사서와 그외의 정보전문직에서 특히 윤리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런 문제들이 이들의 전문직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윤리강령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나라의 실례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현실에서 정보관련전문직 윤리강령이란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考察해 보고져 한다.

## II. 정보관리직의 윤리성

### 1. 윤리성 강조의 당위성

정보전문가나 사서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특정정보의 존재여부와 그 접근방법이나 이용방법을 알며 정보에 의한 附加價值 創出이 곧 그들의 업무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전문직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하는 입장에 있다. 지식이란 엄격히 말해서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 사회집단의 공동으로 축적한 공유물이며 지식을 다루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공유자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킬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4) "A New social concern at ASIS", *Library Journal* (Dec. 1987) p.79-80.

더구나 그들의 일은 전통적으로 價値中立的이라고 믿어 왔던 순수 學問的 연구에 관계되는 일부터 換金性이 아주 높은 최첨단 산업기술에 관계되는 일까지 다양화된 업무와 폭이 넓어진 報酬水準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또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성격, 그 결과가 계속 심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전문직의 계속적인 再照明과 종사자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Bayles는 전문직의 규범을 크게 둘로 보아 의무사항(Obligations)과 허용사항(Permissions)로 구분했는데 전문직 윤리가 규명해야 할 것은 의무사항들로서 그 첫째가 전문직의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분별기준(Standards of virtue and vice)의 설정, 둘째가 자율적인 책임원칙의 확립(Principles of responsibility) 셋째가 구속력이 있는 의무규칙(Rules of duty)을 정하는 일이라고 했다.<sup>5)</sup> 즉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그들의 업무에서 수행능력이나 충실성, 정직성 같은 인간의 속성에 대해 어느 수준을 정해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율적인 책임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裁量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전문직 외부적인 법률이나 사회규범, 또는 소속기관의 규칙까지도 고려된 업무수행 규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제공업무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직원의 자격과 자질, 업무수행능력의 기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직원이 업무수행의 방법이나 資料源의 선택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봉사대상의 고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나 정보요구내용에 대한 기밀성 보장은 개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사생활권에 관계되므로 정보봉사업무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사항간에 많은 相衝이 있기 마련이다. 고객의 사생활권을 지키는 것이 反社會的이고 反國家的인 일이나 다른 개인을 해치는 일을 방관 내지 협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관련 전문직의 윤리적 의무도 다른 전문직에서와 같이 우선은 고객에 대한 것이지만 고객의 제삼자나 사회전반에 대한 것, 또 전문직 자체에 대한 것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선택은

5) Bayles, *op. cit.* p.21-24.

법률적인, 윤리적인, 근본적으로는 인간양심적인 근거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윤리성이 관련되는 업무

前近代的이고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환경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사서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정도가 높은 사회의 엘리트계층으로 자신의 정보요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자들이 있으므로 사서들의 諮問的 역할의 필요가 없었다.

정보가 모든사람의 관심사가 되고 매체나 전달방법이 다양화, 대량화되면서 사서나 정보관리자들의 업무가 크게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사회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회의 전문분야에 걸친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상도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을 빈번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서관이나 정보봉사 기관의 업무에서 윤리성이 더욱 관계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 1) 기술봉사부문

정보의 대량화와 매체와 전달기술의 다양화는 類似情報, 同一情報의 중복현상 또 같은 정보가 다른 정보원에서 다른 전달매체로 생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하였고 따라서 정보시장의 복잡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정보내용의 정확성, 요구에의 適合性이나 경제효율성등의 객관적 사실에 依據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역사상 초창기부터 자료수집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내용검열의 압력이었다. 현대의 개방사회에서 이 문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국가의 정치이념이나 종교 때문에 생기는 제도적이거나 관습적 검열은 도서관의 장서개발이나 정보수집의 중립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따라서 봉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사회의 관습적이며 도덕적인 偏見이나 獨善 때문에 생기는 일반 輿論의 압력도 주관 있는 전문직수행을 방해한다. 장서개발이나 정보수집에 관해서 많은 도서관이 일찍부터 성문화된 정책 규정을 성문화해 놓고 지침으로 사용함으로써 천문직의 所信을 지키며 동시에 도서관 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사용권을 보장한다.

資料나 機器의 구입은 도서관에서 가장 큰 금전적 거래가 개입된다. 특히 현대사회의 知識産業시장규모가 날로 커가고 있고 새로운 매체의 가격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생산자지나 도서관 사무기기의 생산자들의 시장전략경쟁이 날로 치열해가고 있고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구입책임자를 설득한다. 때로는 부당한 압력이나 뇌물, 또는 개인적 특혜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여기서 전문직의 정직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

複製技術의 발달에 따른 해적출판물이나 不法商標 전산기기의 氾濫은 지식유통의 상업질서를 어지럽히는데에 그치지 않고 정보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 절약이라는 명분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복제물의 거래등으로 기관의 불명예뿐 아니라 궁극적인 금전적 손실도 가져올 수도 있다.

구입된 자료의 정리에서도 전문직윤리가 적용된다. 분류나 주제표목, 주제어를 정하는데에서도 분류목록자의 無知나 고의적인 편견이나 기호에 따라 그 자료내용의 정확한 표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지역사회의 편견이나 도서관 모체기관의 분위기의 영향때문에 틀린 내용분석을 하는 것은 자료이용자를 誤導하는 결과가 된다.

## 2) 이용자 봉사 부문

이용자 봉사부문에서는 대인간적인 의무가 우선이다. 즉 직접적으로 고객에 대한 의무와 좀 더 나아가서는 제삼자나 사회전반에 대해 갖게되는 전문직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자료의 이용봉사에서 고객의 자료접근권,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서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자료에 대한 연령의 제한등은 전문적 판단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열람과 대출의 엄격한 관리로 이용자들의 사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흔히 있는 대출자료 返還延滯등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벌칙적용, 과태료등의 금전관리도 정확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부문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상호대차봉사에서 복사물 제작이나 제공에서 著作權의 시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참고봉사나 정보제공봉사에서 근본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할 책임과 업무수행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사서

나 정보전문가의 개인적 신념이나 철학이 정보제공시 자료선택이나 해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둘째 자문역할이 他專門職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특히 의학이나 법률 전문도서관에서 일어나기 쉬운 일이다. 정보전문가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제공에 그쳐야 하며 그 정보에 의한 처방이나 문제해결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때로는 고객의 특정 정보사용의 목적이 반사회적이거나 제삼자에게 해를 끼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넷째, 고객의 개인권과 사생활 존중은 절대 중요하므로 제공된 정보의 내용이나 문의 내용까지도 기밀의 신중성에 유념해야 한다.

### 3) 기타

도서관도 다른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의사 선택과 결정을 매일 해야한다. 經營計劃, 조직과 人事 및 인간관계, 財政管理 등에서 공정하고 순리적인 운영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도서관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를 제때에 收容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관장이나 어느 개인의 명예욕이나 성취욕때문에 時期尙早의 변화를 시도하여 기관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모든 도서관이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업무의 자동화나 기계화가 당연한 추세인 현상황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선택문제는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의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장기적인 계획 및 운영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직한 결정이 요구된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실례를 Stahl은 첫째,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情實이 介在되거나 둘째, 선정된 자문회사로 하여금 자동화작업 과정에서 평소에 기관장이 못마땅하게 여기던 직원을 해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셋째, 자기네가 채택한 시스템이나 기기를 다른도서관에 과대선전하여 상품광고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sup>6)</sup>

6) Wilson M. Stahl, "Automation and ethics: a view from the trenches," *Library Hi Tech*, v.4, no.4(Winter 1986) p.53-57.



자동화가 일부 또는 전부 이루어져서 이용자가 자료 이용이나 정보검색에서 익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서는 이용자를 교육하고 최대의 봉사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검색에서는 검색기술이 검색효과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서의 무능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서관의 이미지를 손상한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인쇄형태의 참고도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절차상 많은 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의 사생활 기밀보장에 더욱 힘이 든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시간에 따라 사용료가 결정되므로 사서가 개인의 私的使用을 도서관 비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반복적인 사용에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던 인쇄매체이용습관에 익숙한 사서자신이나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도 사서가 업무수행에서 다루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개인의 판단력으로 확신 있게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직 단체에서는 공동적인 노력으로 일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의 지침이나 판단의 근거를 삼는다. 많은 전문직 단체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전문직 단체가 윤리강령을 갖는 것이 전문직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효성있는 윤리강령 제정은 실제로 전문직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습관적으로 처리하는 일상 업무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며 현실개선과 향상에 대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III. 사서 및 정보관리직의 윤리강령

#### 1. 윤리강령의 의미.

전문직 윤리강령의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그 분야의 始祖로 받들만한 사람의 글에서 後學들이 정신적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좌우명을

따은 의학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같은것, 둘째로는 미국의 도서관분야 같이 어느개인이 독자적으로 그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을 느껴 작성한 것을 나중에 전문단체에서 채택한 것<sup>7)</sup>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사회의 전문직단체들이 하듯이 단체내의 윤리위원회가 공동작성을하여 채택되는 것 등으로 볼 수있다.

많은 윤리강령이 막연한 이상주의에 기초한 美辭麗句의 나열로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며 개인의 윤리성이나 선의 또는 그 사회의 상식에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면 집단의 내부의 압력이라는 것도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정도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강령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要約할 수 있다. 첫째 공공이익과 더불어 該當 전문직보호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 정신의 첫째가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봉사하기 위하여 우선 전문직 종사자들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막연한 어구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규칙과 시행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전문직 종사자로서 꼭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 명백하게 敘述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직발전과 사회변화에 계속 따라가야 한다. 어느 전문직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특히 기술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규칙적인 토의와 때마침 개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 넷째, 전문직 종사자들의 非理나 非行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sup>8)</sup>

Bekker는 현대사회의 전문직 윤리강령의 일반적 특징은 문장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단순명료하며,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어 실용성과 강제성을 가지며, 내용이 포괄적이며 표현이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윤리강령이 외부지향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윤리강령이 전문직 내부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회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sup>9)</sup>

7) III - 2 참조.

8) Martha Boaz, "Code of ethics, Professional,"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1968-85) vol. 3. p.248.

9) Johan Bekker, *Professional ethics and its application to librarianship*.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6. p.214-216,

전문직 단체의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작성뿐 아니라 운영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DeGeorge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회의 신임을 얻고 전문직의 品位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직 단체가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전문직 단체의 임원들이 너무 권위적인 힘을 행사 하여 윤리강령 시행에 대한 개방적 의견이나 공개토론을 막아서는 안되며 둘째,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罰則이나 資格證取消등이 종사자나 대상고객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셋째, 전문직 단체는 일반고객에게 전문직종사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넷째, 전문직 단체는 그 전문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공개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토론의 장을 공개적으로 갖어야 한다. 다섯째로 전문직 단체는 윤리강령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직업을 잃게 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에서 싸워 주어야 한다. 결국 전문직 종사자나 고객 양쪽이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전문직 단체가 양쪽을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방법의 기본적인 지침이 윤리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sup>10)</sup>

## 2. 미국의 사서직 윤리강령<sup>11)</sup>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은 미국에서 도서관협회가 결성된 19세기 말부터 보였다. 따라서 司書職의 직업윤리에 관한 토의는 초창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온 이후였다. 1903년에 New York의 Pratt Institute의 도서관학교의 학장이었던 M. W. Plummer 가 도서관학 교육과정내용을 설정하는 논문에서 사서들이 필수로 훈련받아야 할 분야를 書誌的 知識, 技術的 知識, 經營的 知識, 그리고 인격적인 훈련으로 지적하고 마지막 인격적인 훈련 부분에서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내어 놓은것이 윤리강령의 시초로 볼 수 있다.

10) Richard T. DeGeorge, *Business ethics*. 2d ed. (New York: Macmillan, 1986) p.346-348.

11) Jonathan A. Lindsey and Ann E. Prentice, *Professional ethics and librarians* (Phoenix, Ariz.: Oryx Press, 1985) Chapt. 2: American library codes of ethics: a documentary approach. 에서 사실 참조.

그 후 1909년에 C. K. Bolton은 이 행동규범을 좀 더 개정하고 여러사람들의 중의  
를 모아 새로운 案을 만들어서 The Librarian's Canon of Ethics 라는 제목으로 학술  
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 윤리강령의 문제를 연구하고 협회의 관심을 환기시  
켰으며 1922년에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에서 각분  
야의 전문직 윤리강령의 토의가 있게되자 사서직을 대표하여 그학술지에 그가 작성한 사  
서의 윤리 규범을 내놓았다. 그 이후 이 試案은 미국도서관협회의 윤리강령위원회에서  
여러차례의 토의와 개정을 거쳐 1939년에 가사야 정식으로는 최초의 강령으로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이라는 제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윤리강령은 서문부분을 포함하여 6부분의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張皇한  
선언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사서들의 도서관이 속해있는 母體機關과의 관계에 대한  
것, 2)도서관의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것, 3) 單位圖書館 조직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 4) 사서직의 職業觀내지 專門意識에 관한 것, 5)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관하여 각각 서술되어 있다.

이 綱領에서는 이것이 채택되었던 시대에서 도서관이나 사서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역  
할이 그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으로  
도서관이 속한 管轄部署 조직내에서의 사서의 위치 같은 사서와 조직과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였고 도서관 이용자 권리나 도서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인 情報流通에 대한 책  
임 같은 도서관조직 외부적인 문제는 강조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확대와 사서직에 대한 인식변화는 사서직내부에서도  
좀 더 개방적인 사회활동을 지향하고 이용자의 기본권리인 知的自由나 情報接近權을 보  
장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39년의 윤리강령은 그 내용과 문구가 도서관  
운영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용자중심의 여러가지 도서관政策文이 전문직내에  
서 작성 채택되면서 윤리강령과 補完관계를 갖고 사서직의 기준 규범으로 받아드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949년에 채택된 圖書館 權利 憲章(Library Bill of Right)은 1980년까  
지 세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는데 여기서는 도서관의 資料蒐集의 공정성, 情報內容  
檢閱에 대한 거부, 表現과 情報接近에 대한 자유의 保障, 지역사회시민을 위한 도서관시

설의 적극활용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 이 후 점차 高潮된 국민의 알권리, 지적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의식은 1953년에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공동으로 작성 채택한 읽을 자유에 대한 宣言文(Freedom to Read Statement)이나 1979년에 시청각교육자료실협회가 채택한 시청의 자유에 대한 선언문(Freedom to View Statement)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sup>12)</sup> 1975년에 개정된 윤리강령에서는 도서관권리헌장과 읽을 자유에 대한 선언문과의 밀접한 統合性을 나타내는 簡潔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권리헌장에서 이미 도서관의 의무와 책임조항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헌장을 遵守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책을 是正할 의무를 사서가 인식해야 하며(1-2항) 이용자의 私生活機密을 지키며(3항) 직책이나 기관의 이름으로 私益追求를 할 수 없으며(4항) 도서관 내의 인사관리와 운영에서의 공정성 추구(5-6항)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장황하고 애매한 내용이라고 비판받던 1939년의 강령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기는 하나 채택직후부터 각분야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이 강령이 구체적으로 개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을 확실히 제시하여 실용성이 있으면서 한편 좀 더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용자봉사에 대한 의무감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강령이 사서들의 업무에서 활성화된 문서로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문제가 정리 되었다.<sup>13)</sup> 1981년에 다시 개정된 현재의 강령에서는 일반론인 서론에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 시민의 지적자유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사서직의 책임, 정보유통과 사상전달에 대한 의무, 사서직 수행에 필요한 資質과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서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6개의 항목으로 천명하였다. 1) 정보이용자에 대해 유용한 자료의 공급과 평등한 봉사, 정확하고 편견없는 정보의 제공. 2) 자료검열에 대한 거부. 3) 이용자의 사생활 기밀보장. 4) 인사문제와 동료관계에서 기회의 평등권 준수. 5) 개인의

12) *Freedom to Read*, 1970. A Joint Statement of ALA and AAP. *Freedom to View*, adopted by ALA Council and the Educational Film Association. In *Defusing Censorship*, by Frances Jones. (Phoenix: Oryx Press, 1983) Appendix 2. p. 157-8, 186-91.

13) Lindsey, *op. cit.*, p.61.

私見과 기관이나 전문직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의 명백한 구별. 5) 기관이나 직책을 이용한 사익추구의 금지 등이다.<sup>14)</sup>

사서들의 직무와 관계되는 윤리성 강조의 노력은 도서관 봉사 각부문에서 나타나는데 그 한 예를 참고봉사부문에서 볼 수 있다. 1979년 ALA의 참고및 성인 봉사부(Reference and Adult Service Division - RASD)의 標準分科委員會에서는 1976년에 채택한 정보봉사 지침에 윤리에 관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봉사의 평등성, 개인의 기밀보장, 최대봉사이론 적용, 사익추구 금지 등이다.<sup>15)</sup>

도서관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연관단체인 美國情報學會(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ASIS)에서도 정보관리분야, 특히 산업정보를 다루는 상업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선언문 작성을 논의하고 초안이 제의되었다.<sup>16)</sup> ASIS는 이 문제를 1985년도 연차총회의 주제로 삼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총회에서 토의된 많은 문제가 여러 문헌에 발표되었다.<sup>17)</sup>

많은 贊反의 의견을 보면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문단체인 ASIS가 전문직요건인 윤리 강령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미 전문직내의 비행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런 規制根據가 없으므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윤리 강령은 必需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입장이나 觀望의 입장에서는 강령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일반론적인 것은 있으나 마나이며 구체적인 것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점과 또 전문단체가 과연 그 전문직 분야의 기준을 제시 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sup>18)</sup>

14) Ibid., p.63-64.

15) "A Commitment to information services: developmental guidelines" RQ vol.18 (Spring, 1979) p.275-277.

16) F. W. Horton, Jr, "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Information management*, vol.18, no.10 (1984) p.24-25.

17) Manfred Kohlen, "Ethics and information science," *JASIS*, vol.38, no.3 (March, 1987) p.206-210. Diana Woodward. "Commentary on F.W. Horton's Information Bill of Rights." *JASIS*, vol.38, no.2 (Feb. 1987) p.130-132. Robert F. Barnes. "Some thoughts on Professional ethics codes," *ASIS Bulletin*, (April/May, 1986) p.19-20.

18) Barnes. *op. cit.*, p.19.

여기서 이론의 합의를 보지 못한 기본적인 命題는 누가 무슨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졌느냐에 관한 것이었는데 Woodward는 Horton이 만든 정보권리 헌장의 초안이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의한 개인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권보장이 주안점이 되었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권리행사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르는 의무와 그 우선순위, 사회전체적인 得失등의 기본문제가 우선 糾明되어야만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sup>19)</sup> Kohen도 권리헌장이나 강령이 시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靜的인 것(static)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動的인 것(dynamic)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sup>20)</sup> 도서관 사서의 업무보다 훨씬 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頻繁할 정보서비스업계의 정보관리자를 포함하는 단체인 미국정보학회에서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키고 있다.

### 3. 英國과 日本의 실례.

#### 1) 영국

영국 도서관협회 (Library Association - L.A.) 회원관리나 대외업무에서 어느면으로도 미국의 협회에 뒤지지 않으나 전문직 윤리강령 채택에서는 오랫동안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認識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는 L.A.의 憲章이나 條例細則등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회원의 입회단계에서 자격요건의 명시나 정계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어 회원이라면 이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따로 윤리강령을 작성하는 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60년대에 들어 와서야 다른 전문직단체의 영향과 미국 도서관계의 영향을 받고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sup>21)</sup> 그리고도 한참 후인 1978년에나 되어서야 도서관협

19) Woodward. *op. cit.*,

20) Kohen, *op. cit.*, p. 209.

21) D.J. Foskett, *The Creed of a librarian: no politics, no religion, no morals*.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Special and Information Section North Western Group. Occasional Paper, no.3. 1962.

회는 전문직윤리작성위원회(Working Party on Professional Ethics)를 發足하고 1980년에는 윤리강령 초안이 작성되었다.<sup>22)</sup>이 초안에 부친 서문에서 작성위원회의 회장인 Usherwood는 강령채택의 이유를 지식이 더욱 큰 힘으로 작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이용고객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서나 정보관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우선으로 들었고 또한 윤리강령이 전문직의 象徴이며 종사자들의 전문직 수준향상에 대한 노력의 표현이며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이 초안의 작성 과정에서 사서의 업무수행상 고객과 사서자신들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분야를 6가지로 규정하였다. 즉 그것은 1) 사서의 업무수행능력, 2) 고객의 사생활권을 존중하는 신중성, 3) 독자적인 업무수행과 지적자유 수호, 4) 無私公平한 전문성, 5) 재정적인 윤리성, 6) 인간적인 성실성 등이며 윤리강령에서 이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sup>23)</sup> 이러한 내용의 강령을 통해 사서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그들이 봉사하는 고객 그리고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책임, 정보와 사상의 원활한 유통에 대한 책임, 업무수행 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 그리고 사서직의 명예를 毀損시키지 않아야 하는 책임을 질 것을 공약하는 것이다.<sup>24)</sup>

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위원회는 윤리강령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과 채택 이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전문직단체의 책임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즉 회원및 관계고객에게 강령의 내용을 弘報하고 사서의 비행을 알아내며 懲戒手段과 罰則規定을 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토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up>25)</sup>

1980년의 초안은 많은 의견의 수렴과 토의를 거쳐 1983년에 결정적인 본안이 채택되었다.<sup>26)</sup> 여기서는 초안에서 제기된 모든점을 수용하였지만 구성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

22) Library Association, *Draft code of professional ethics*. Published as a supplement to Library Association Record, 82, no.10(Oct. 1980)

23) Bob Usherwood, "Towards a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slib Proceedings*, 33, no.6 (June, 1981) p.233.

24) *Ibid.*, p.241.

25) *Ibid.*, p.240.

26) Library Association. *Yearbook* 1985 년 이후 게재.



있는데 도서관협회의 법규와 세부시행사항과의 절대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하였다. 내용구성은 3부로 되어 있어 첫부분에서 도서관협회 회원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專門職評價基準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그 행위의 是非를 점검하기 위해 제2부에서 협회의 규칙과 세칙을 우선 지키면서 다음으로 명시된 11개의 항목(a-k)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부가 실제적인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초안에서 포함된 항목이 정리되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2항목(j-k)은 강령의 실제운영에서 회원들이 참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지었는데 자신이나 동료의 직무상 실수나 비행을 협회사무국에 보고하는 것과 징계위원회의 문이나 출두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3부의 3개 항목은 직무상의 비리가 인정될 때 취해지는 징계절차를 명시했는데 그 輕重에 따라 警告나 訓戒 또는 자격정지나 회원권 박탈 등 협회세칙에 따라 처리된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윤리강령이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실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초안작성위원회가 강조한 결과이며 미국도서관협회가 2차례의 공식적인 개정 때마다 토의는 되면서도 채택이 안되는 강령의 징계효과에 따른 강요성부여를 과감하게 시도함으로써 강령이 단순한 勸獎事項에서 전문직 내부의 自己省察이나 監察의 도구가 되게 한 것이다.

## 2) 일본

일본 도서관의 윤리강령은 그보다 앞서 制定된 圖書館의 自由에 관한 宣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선언의 내용을 우선 알아야 한다.

이차대전 이후 쓰라린 패전의 경험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맞본 일본사회는 知的自由에 대한 왕성한 욕구가 사회전반에 傳播되었고 곧 뒤따른 한국전쟁에서 오는 불안감은 반전사상이나 政治的 中立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知識活動에 대한 官權介入에 대한 강한 반발이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1949년에 이미 미국에서는 도서관관리헌장이 채택되었고 지적자유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52년에 사회안정을 위해 입법한 破壞活動防止法과 관련하여 경찰의 간섭이 도서관 자료검열이나 이용자감시등으로 나타나게 되자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서관헌장 제정에 대

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sup>27)</sup>

1954년에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圖書館의 自由에 관한 宣言'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선언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제공해야할 임무가 있음을 밝히고 그 구체적으로 도서관은 1)자료수집의 자유, 2) 자료제공의 자유, 3)부당한 검열에 대한 반대를 확인 실천하며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인 모두가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sup>28)</sup>

이 선언은 1979년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셋째 항목으로 이용자의 비밀을 지킬 것을 추가하고 셋째 항목이었던 부당한 검열에 대한 반대를 넷째 항목으로 내리면서 '부당한 검열'을 '모든 검열'이라는 말로 바꾸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이 선언문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게 된것이다.<sup>29)</sup> 모든 도서관은 이 선언문을 그들의 업무지침의 기본으로 받아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1980년에 만들어진 윤리강령에서도 맨머리 부분에서 "이 강령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과는 表裏一體의 관계를 갖는다" 고 천명한다.<sup>30)</sup>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도서관계 같이 윤리강령에 대해 특별한 意味 賦與를 하기보다는 앞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직업집단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각자의 판단에 의한 自覺 이외의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관중이나 관내에서의 지위나 직무에 관계 없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든사람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사회에 대해 誓約하는 要式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윤리강령이 사서직의 전문성강조를 위한 선언문인 것에 비해 이것은 제목까지도 단순히 '도서관인의 윤리강령'으로 하였다.

내용의 골자를 살펴 보면 12개의 항목이 7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처음의 5개항이 도서관인의 기본적 태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 자료에 대한 책임의 3개 부문을 이루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그 다음 연수에 힘써야 할 책임의 부문에서 전문성 개발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제 6항) 넷째부

27) "圖書館と中立についての討論" 圖書館雜誌, 46, no.8 (1952. 8) 특집

28)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 關する宣言. 圖書館雜誌, 48, no.7(1954.7)

29)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 關する宣言. 1979年 改訂. 圖書館雜誌, 73, no.8 (1979. 8) p.418-419.

30)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員の倫理綱領. 圖書館雜誌, 74, no.8 (1980.8) p.354-355.

문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에서 도서관의 운영계획에의 적극적인 참여,(제7항) 동료간의 긴밀한 협조로 전문적 능력의 향상,(제8항)도서관봉사를 위한 적절한 勞動條件의 확보(제9항)를 다짐하고 다섯째 부문에서는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제10항) 과 여섯째 부문의 文化創造에의 寄與에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다른단체와의 협력으로 문화환경조성에 힘쓸 것(제11항) 출판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정보유통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윤리강령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실점까지 이 강령의 실행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 되어 왔고 특히 1990년에는 圖書館雜誌는 윤리강령 제정 10주년을 맞아 도서관원들이 그들의 직무에서 윤리강령실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다루는 특집을 냈다.<sup>31)</sup>여기서는 각 관중도서관의 특수환경에서 나름대로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전문직 의식에 관한 새로운 규명이었다.

특히 도서관인의 직업집단 人的 構成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身分의 集合體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같은 수준의 업무수행이나 전문직 윤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久保輝巳)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산업의 급진적인 발달로 도서관의 전문성을 요하는 많은 업무를 상업적인 정보서비스기관이 대행을 하게 되고 이용자들도 사서의 媒介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짐에 따라 전문도서관의 사서의 전문성이 애매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 되었다.(山崎久道) 그러므로 정보전문직이나 사서직에서의 전문성을 재정립하고나서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었다.

#### 4. 계속되는 실효성에 대한 爭點

앞에서 살펴본 어느나라의 사례에서도 사서직의 윤리강령이 업무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문직의 걸 치례를 위한 홍보용 선전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있다.<sup>32)</sup>

31) “いま、職員問題は—圖書館の倫理綱領 10年を迎えて。” 圖書館雜誌, vol. 84, no.11(1990,11) p.727-741.

32) Lee W. Finks. “Librarianship needs a new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merican Librarians*, vol.22, no.1(Jan. 1991) p.84.

미국도서관협회의 1981년 개정의 윤리강령이 채택된후 여러사람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지만 원로학자인 Asheim은 전체적인 표현방식이 사람들의 참여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인 문구를 사용한것이 이것을 일상 업무에서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호응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고 사실상 윤리규범은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성문화해 놓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sup>33)</sup> 또 여러사람이 윤리강령의 정계효과에 따르는 구속성이 결여된 것에 대한 지적도 들고 나왔다.<sup>34)</sup>

Finks<sup>35)</sup>는 Bekker<sup>36)</sup>의 논문에서 주장한 바를 提唱하였는데 Bekker는 모든 전문직에서는 공통적인 기본 윤리가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각 직종의 고유의 업무성격에 따라 특별한 항목을 指定하며 바로 그 固有項目이 제대로 잘 설명되고 納得 되어야만 그윤리강령이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서직의 윤리강령에서도 모든 다른 전문직에서 천명하는 기본사항은 직업에 대한 본질적인 價値觀, 기밀을 요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慎重性, 직업외의 개인활동에서 지켜야할 사항, 자기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의 노력과 연구, 전문지식향상을 통한 전문직의 발전, 전문직단체활동에의 참여, 동료간의 自律的인 督勵와 監視등이며 사서직에서 고유사항으로 강조되고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사항은 知的自由와 情報資料選擇의 문제라고 하였다. Fink는 ALA의 현재의 윤리강령이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서직에서의 특별한 책임으로서의 지적자유 수호와 자료의 선택의 임무에 대해 Stichler<sup>37)</sup>는 ALA의 지적자유에 대한 정의가 사실상 모든사상이나 표현에서 완전히 구속을 排除하고 따라서 사서는 정보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서들의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自主

33) Lindsey. *op.cit.*, p.71-72.

34) *Ibid.*, p.72-73, p.75.

35) Finks. *op. cit.*,

36) Bekker. *op. cit.*,

37) Richard N. Stichler. "On reforming ALA's Code of ethics," *American Libraries*, vol.23, no.1(Jan. 1992)

성을 갖지 않고는 책임의식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교육받은 시민이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민주사회에서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개인의 복지를 위한 정보자료의 선택은 사서의 적극적이고도 자율적인 책임으로 인식 되어야만 사서직의 전문성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 IV. 결 론

전문직의 의미규명이나 전문직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옛날에는 單純勞動으로 원시적인 道具나 기술로 하던 일들이 그 수행방법, 사용되는 도구나 과정이 고도의 기술이나 이론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따라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일을 일반직에서 전문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문직단체의 윤리강령의 내용이 어떤 것이 전문직수행에 실제로 어떤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 될 것이며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강령의 實效性에 대한 기대를 무엇을 일만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리강령의 항목 하나하나가 실무의 지침으로 실제 적용이 되고 業務遂行與否를 재어보는 잣대가 되며 또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 경고나 처벌을 하는 엄격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전문직의식을 鼓吹하기 위한 자기향상의 點檢道具나 전문직단체의 요식적인 자기 표현도구인가에 따라서 실효성의 기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강령에서 전자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도 전문직의 자율성을 감안한다면 자기향상의 점검도구로서 일상업무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토의 함으로서 전문직의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윤리강령의 존재이유가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나 정보전문직 윤리강령은 對外的으로 정보나 자료의 이용자들에게도 윤리의식을 교육시키는 도구로서의 실용성도 생각할 수 있다. 봉사자로서의 사서가 어떤 전문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앞으로서 고객으로서 정보나 자료, 또는 시설이용에 대한 예의

나 윤리성, 즉 사회의 知識資源을 소중히 알고 타인의 지적소유권 존중, 지적자유나 정보접근권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sup>38)</sup>

많은 전문직에서 이미 전문직윤리를 교육과정에서 포함시켰거나 현장교육에서 세미나의 주제로 택하고 있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자원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으로 새로운 지식자산의 창출이 가져오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향상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정보관리분야의 윤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8) Mary Reichel. "Ethics and library instruction," RQ, vol.28, no.4 (Summer, 1989) p.477-80.

## 參考文獻

- “圖書館と中立口ついでの討論.” 圖書館雜誌, vol.46, no.8 (1952.8) 특집
- “いま職員問題は : 圖書館員の倫理綱領 10年を迎えて.” 圖書館雜誌, vol.84, no.11 (1990.11) 특집.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口 關する 宣言. 圖書館雜誌, vol.48, no.7 (1954.7)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口 關する 宣言. 1979年 改訂. 圖書館雜誌, vol.73, no.8(1979.8) p.418-419.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員の 倫理綱領. 圖書館雜誌, vol.74, no.8(1980.8) p.354-355.
- 職業과 倫理.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85. (연구총서, 85-9)
- Barnes, Robert F. “Some thoughts on professional ethics code.” *ASIS Bulletin*, (April/May, 1986) p.19-20.
- Bayles, Michael D. *Professional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Co., 1981.
- Bekker, Johan. *Professional ethics and its application to librarianship*.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6.
- Boaz, Martha. "Code of ethics, Professional."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1968-85. vol.3.
- Cogan, Morris L. "The Problems of defining a profession." *In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conduct*. Ed. by B.Y. Landis. Philadelph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297.(1955)
- “A Commitment to information services: developmental guidelines.” *RQ*, vol.18 (Spring, 1979) p.275-277.
- DeGeorge, Richard T. *Business ethics*. 2d ed. New York, Macmillan, 1986.
- Ethics and reference services*. Edited by Bill Katz and Ruth Fraley. *Reference librarian*, no.4 (1982)

- Finks, Lee W. "Librarianship needs a new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merican libraries*, vol.22, no.1(Jan. 1991) p.84-92.
- Foskett, D. J. *The Creed of a librarian: no politics, no religion, no morals*.  
London, Library Association. Reference, Special and Information  
Section. North Western Group. Occasional paper, no.3 (1962)
- Freedom to read*. 1970. A Joint statement of ALA and AAP. *Freedom to view*,  
adopted by ALA Council and the Educational Film Association. In  
*Defusing censorship*, by Frances Jones. Phoenix, Ariz., Oryx Press, 1983.
- Hauptman, Robert. *Ethical challenges in librarianship*. Phoenix, Ariz., Oryx  
Press, 1988.
- Horton, F.W. Jr. "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Information management*, vol.1  
8, no.10 (1984) p.24-25.
- Kohen, Manfred. "Ethics and information science." *JASIS*, vol.38, no.3 (Mar. 1  
987) p.206-210.
- Library Association. *Draft code of professional ethics*. Published as a supplement  
to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82, no.10 (Oct. 1980)
- Lindsey, Jonathan A. and Prentice Ann E. *Professional ethics and  
librarians*. Phoenix, Ariz.: Oryx Press, 1985.
- Moore, Wilbert E. *The Professions: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 "A New social concern at ASIS." *Library Journal* (Dec. 1987) p.79-80
- Reichel, Mary. "Ethics and library instruction." *RQ*, vol.28, no.4(Sum-  
mer, 1989)
- Stahl, Wilson M. "Automation ethics : a view from the trenches." *Library  
Hi Tech*, vol.4, no.4 (Winter 1986) p.53-57.
- Stichler, Richard N. "On reforming ALA's Code of ethics" . *American Librari-  
es*, vol.23, no.1(Jan. 1992)



---

Stover, M.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reference service" *RQ* vol.27  
(Winter 1987) p.240-244.

Usherwood, Bob. "Towards a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slib proceedings*, vol.33, no.6(June 1981) p.233-242.

Woodward, Diana. "Commentary on F.W. Horton's Information Bill of Rights." *JASIS* vol.38, no.2 (Feb. 1987) p.130-132.

## Professional Ethics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Works

### Abstract

Soon-Ja Lee\*

Librarians long ago proclaimed themselves professionals. Until recently, howeve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gave very little thought to professional ethics, which have come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all areas in modern society. They have been stimulated to consider their specific domain within an ethical context now.

Professional norms express obligations which include prescribing standards, principles of responsibilities, and rules of duties. Professional codes attempt to formulate the norms of professional ethics and are the basis for disciplinary measures of various kinds.

This paper discusses professional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librarianship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he codes of ethic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Library Association, and of the Japanese Library Association have been reviewed and compared. The arguments on the enforcibility of the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therefore, on their effectiveness have been discussed.

Author concludes that, despite some doubts o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ethics code expressed by a number of scholars, a code of ethics is very much required in the information professions. Properly disseminated, a code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would enhance the status and standing of the profession by demonstrating concer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standards of professional services. It would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consciousness of the clients by communicating the value of the works.